

# 미국 · 중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주요내용

지난 7월 28일 미국에서는 미국과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비준안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CAFTA 비준을 둘러싸고 설탕 및 섬유업자들의 반발 속에서 많은 진통을 겪어 온 점을 감안하면 CAFTA의 미 하원 통과는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대통령 서명절차를 마치고 CAFTA가 정식 발효되면 미국과 중미 6개국은 연간 320억 달러(미국 수입액 177억 달러, 수출액 157억 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상품에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게 된다. 이로서 미국은 캐나다 ·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호주, 칠레, 싱가포르, 요르단, 이스라엘 등 13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CAFTA 추진 배경과 경과, 목적, 그리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CAFTA 추진배경 및 경과

미국과 중미간 FTA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사실상 중미 국가들은 수년에 걸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원했지만 그러한 기회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1984년 카리브유역경제협력법(Caribbean Basin Economic Partnership Act: CBTPA)의 통과로 중미 국가들이 미국시장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1994년 1월에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에 의한 잠재적인 무역 및 투자전

환 효과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졌다. NAFTA가 발효된 이후 이 국가들은 미국에 대하여 멕시코가 NAFTA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누리는 접근성을 자기들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1996~1997년까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미국가들은 실망감을 안은 상태에서 이 국가들이 이미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추진에 깊숙이 간여해 옴으로써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재고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1997년 5월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였을 때 중미 국가 정부들은 중미와 미국간 FTA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당시 중미 국가들의 대통령들이 제안한 사항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단기적인 것으로서 멕시코와 같이 NAFTA의 혜택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FTA 협상을 개시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클린턴 대통령은 신속처리권한 결여 등의 이유로 중미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미 국가와 미국간의 FTA 구상은 그로부터 4년 후인 2001년에 가서 진전을 이루게 된다.

미국이 중미 국가들에게 FTA 협상을 제안한 것은 2001년 4월이었다. 그리고 2002년 1월 16일 부시 대통령은 중미의 5개국 FTA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이어 수차례에 걸친 기술적 회의와 자문을 거쳐 2003년 1월 8일 중미-도미니카공화국-미국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Dominican Republic -United States-Free Agreement: CAFTA-DR FTA)의 첫 협상이 열렸다. 이 시기는 미국 의회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또는 Fast Track)을 승인한 직후이다.

부시정부는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CAFTA-DR FTA협상을 추진해 왔다. 협상 개시 1년만에 당사자간 합의를 마쳤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 7년 이상이 소요되고, FTAA은 거의 10년이 넘게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CAFTA-DR FTA협상은 매우 단기간에 종료된 것이다. CAFTA-DR FTA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 무역정책의 시험대이며, FTAA

를 향한 진일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시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CAFTA-DR FTA가 미칠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협상이 종료된 뒤에도 미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논란을 겪어 왔다. 상원은 6월 30일 본회의에서 찬성 54, 반대 45표로 비준안을 승인하였다. 동 비준안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25-16로 통과되는데 이어 7월 7일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를 통과하여 하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7월 28일 드디어 하원을 통과하였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신속처리법에 의해 대통령이 마련한 협상에 대해 의회는 내용은 수정할 수 없고 단지 찬, 반 투표만 할 수 있다.

## 2. 협상의 목적 및 동기

### 2.1. 미국

CAFTA-DR FTA에 대한 미국의 동기와 목적은 경제적, 무역정책, 안보, 정치 및 전략적 목적 등 복합적이다. 어떤 목적들은 명시적이면서 직접적인데 비해 어떤 것들은 암묵적이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CAFTA-DR FTA의 목적은 경쟁적인 자유화와 서방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한 국가들과 경제동맹을 실현하는 것이다.

#### 2.1.1. 무역정책과 관련된 목적

CAFTA-DR FTA는 FTAA의 디딤돌이 될과 동시에 다자간, 지역적, 쌍무적 무역협상 등 세 가지 무역협상에서 하나의 전략이다. 만일 다자간 협상인 WTO 또는 FTAA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다른 전략(쌍무협상)을 택한다. 미국이 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상에만 매달리지 않고 쌍무협상에도 의지할 수 있음을 이해당사국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미국은 FTAA 추

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AFTA-DR FTA는 미국이 보호 무역 쪽으로 무역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2002 농업법, 철강산업 보호조치, 최근 무역촉진권한법령에 포함된 몇 가지 요소에 대한 외부 세계의 오해를 떨쳐버리고 자유무역을 향한 미국의 무역정책 신호를 세계에 전하는 역할이 기대되었다. 아울러 CAFTA-DR FTA는 작은 국가도 미국과 현대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나름대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 2.1.2. 국가안보

미국은 중미 국가들과를 FTA를 체결하여 긴밀한 정치·경제관계를 유지하면 마약거래와 돈세탁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미 국가들이 국제테러조직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미국은 중미국가들과의 FTA체결은 중미 국가경제의 성장과 고용기회 확대를 가져와 이들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2.1.3. 정치 및 전략적 목적

중미국가들의 경제, 정치, 사회개혁은 2002년 1월 16일 부시대통령이 중미 국가들과 FTA를 제안하면서 언급한 CAFTA-DR 목적 중 하나이다. 미국은 이미 NAFTA를 통해 FTA가 경제개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촉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TA를 통한 민주주의 개선 효과는 대부분의 중미국가들에서 경쟁정책, 정부조달, 관세, 행정적 투명성 면에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매우 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중미 국가들과 FTA를 통해 지역의 경제, 정치, 사회개혁을 이룬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 지역의 빈곤과 불안정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2001년과 2002년에 남미경제 및 정치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아르헨티나 경제상황이 2001년도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당시 어려움에 처한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 발전, 경제 및 고용 성장 등을 향한 높은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9.11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한 나머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미와 FTA 추진은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정치적 협력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이 지역에서 경제개혁의 후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 2.1.4. 경제적 목적

중미 전체 GDP는 560억 달러에 달해 칠레보다도 적지만 2002년 이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00억 달러로서 중미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다음으로 중요한 미국의 수출시장이다. 중미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성향과 미국 수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고려할 때 CAFTA-DR은 미국의 수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미와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확대를 하나의 목표로 삼은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특정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섬유 및 의류 분야에서 중미 투자 확대에 양측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 2.2. 중미 국가

### 2.2.1. 무역정책관련 목적

중미 국가들이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은 미국이 최근 중미국가로부터 섬유 수입

을 중단한 TPA 협상과 2000년의 CBTPA하에서 제공했던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서 중단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CAFTA-DR 하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어려워져 미국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자와 수출업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FTAA는 목표가 원대하고 복잡한 협상인데 비해 그의 정확한 결과는 불확실하다. 일부에서는 FTAA의 타결시한인 2005년 1월에 대해 회의를 나타낸다. 반면에 CAFTA-DR은 중미 국가들에게 FTAA의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그들의 주된 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 2.2.2. 경제 및 개발 이득

CAFTA-DR의 기본적인 목적은 경제성장을 위해 중미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해당지역의 협소한 시장규모와 수입대체 기회의 소진으로 중미국가들은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세계 최대의 시장과의 통합에 의한 투자확대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란 점을 깨달았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중미의 거의 전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커피, 쇠고기, 설탕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품목과 장식 식물, 멜론, 파인애플, 새우, 커피 등과 같은 비전통적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중미는 전자부품의 조립과 제조업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텔이 코스타리카에 부품조립공장을 건설하였는데 그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훈련 수준이 향상되고 부품공급업체가 성장하였다. 관광업, 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서비스 부문도 FTA로 성장, 발전될 수 있는 부문이다. 그러한 부문이 발전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발전되고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섬유 및 의류는 중미와 미국 간 무역정책의 핵심적인 대상이었는데 자유무역협정으로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미국가들이 미국과의 FTA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이득 중의 하나는 무역 및 국제화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갖는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을

통해 제2의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세관, 표준화, 인증기관, 경쟁 정책 기구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FTA를 통해 중미 국가들이 소유권, 법률, 사법제도 등을 개혁함으로써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2.2.3. 정치적 이득

정치적으로는 FTA를 통해 사회조건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 및 경제의 추가적인 개혁에 대한 내부적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 3. FTA 협정의 주요 내용

### 3.1. 주요 내용

#### 3.1.1. 시장접근

협정에서 예외 품목은 없다. 무역자유화는 관세인하와 TRQ 확대, 그리고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미 각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에 대해 각기 다른 양허안을 갖는다. 미국은 6개국에 대해 하나의 양허안을 작성하였지만 TRQ 양허안은 국별로 작성하였다. 미국의 설탕, 코스타리카의 신선 감자와 양파, 다른 중미 아메리카 국가의 흰옥수수 (white corn)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인하한다.

#### 3.1.2. 관세철폐

관세는 상호 협상에 의한 양허계획에 따라 철폐하되, 이행기간은 즉시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12년 또는 15년내 철폐, 17~20년내 철폐 (닭다리, 쌀 및 일부 낙농제품) 등으로 구분된다. 일부품목은 이행초기연도에는 소폭 인하하고 이행 후반기에 대폭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 3.1.3. TRQ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TRQ의 신설과 확장을 통해 즉각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한다. 쿼터내 물량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3.1.4. 긴급구제

관세인하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일정 기간 관세 인상을 허용하는 긴급구제 제도가 일부 품목에 대해 마련되었다. 긴급구제조치의 발동가격과 관세 인하폭은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다. 관세 철폐가 완료되면 긴급구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미국은 낙농제품, 땅콩, 땅콩버터에 대한 관세의 쿼터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적용한다.

### 3.1.5. 동식물검역

양측은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WTO의 동식물검역규정 준수에 합의한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식물검역위원회를 설치한다. FTA 협상을 보장하기 위해 양측은 무역을 제한하는 SPS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 3.1.6. 수출보조

수출보조를 실시하는 제3국과의 경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보조 지급을 금지한다.

## 3.2. 농산물의 주요 양허 내용

### 3.2.1 축산물

#### (1) 쇠고기

CAFTA-DR 국가들에서 쇠고기 양허관세율은 35~79%이지만 실행세율은 15~30% 수준이다. 동 협정에 의해 중미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



세를 즉시 철폐한다. 다만 도미니카공화국만은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  
되, TRQ를 1,1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10%씩 확대한다. 기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년 또는 그 보다 조기에 철폐된다. 미국은  
26%로 되어 있는 쿼터외 관세를 15년에 걸쳐 폐지한다. WTO하에서 TRQ  
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CAFTA-DR FTA 우대 TRQ가 개설되는데 예컨  
대 코스타리카에 대해서는 경우 10,536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5%씩 증량한  
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32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10%씩 증량한다.

## (2) 돼지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6개국의 WTO 양허세율은 35~60%인 반면 실행세율은  
15~47%이다. 이 국가들의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일부품목에 대한 구제  
조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15년내에 철폐될 예정이다. 중미 5개국들은 베이  
컨과 일부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중미국가 6개국은 총 13,613톤의 TRQ물량을 설정하였는데 이 물량은  
5~15%씩 증량될 것이다.

국별 양허 예를 보면 코스타리카는 베이컨과 돼지고기 부산물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  
이다. 관세인하는 이행 후반기로 갈수록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TRQ를 넘  
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구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초기연도 1,100톤으로  
설정된 TRQ는 초기 5년간은 매년 10%씩 증량되고, 다음 5년간은 12%씩,  
그리고 마지막 4년간은 15%씩 늘어날 것이다. 카리브연안지침(Caribbean  
Basin Initiatives: CBI)하에서 중미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  
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 (3) 가금육

가금육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WTO 양허관세는 35~250%인데, 일부 국가  
에서 닭다리에 대한 실행관세는 164%가 넘는다. FTA협정에 따라 중미국  
가들은 닭고기 및 닭고기제품에 대한 관세를 18년 내에 철폐하고 도미니

카는 닭고기에 대한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닭다리를 제외한 닭고기 관세는 주로 10년 안에 철폐될 것이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구제조치가 마련되어있다.

닭다리에 대한 관세는 도미니카는 20년 안에, 코스타리카는 17년 안에, 나머지 4개국은 18년 안에 철폐될 것이다. 도미니카는 닭다리에 대해 550톤의 TRQ를 설정해서 매년 10%씩 증량한다. 또한 도미니카는 뼈없는 닭고기 TRQ를 440톤 설정해서 매년 10%씩 증량하여 10년내에 쿼터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칠면조 고기에 대해서는 3,850톤의 TRQ를 설정하여 15년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타리카는 미국에 대해 330톤의 TRQ를 제공하되, 매년 10%씩 증량한다. 나머지 4개국의 중미국가들은 영세율로 수입되는 21,810톤의 지역 TRQ를 제공한다. 5년후 TRQ물량은 지역의 닭고기 생산량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미국은 CBI에 따라 중미 및 도미니카로부터의 닭고기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3.2.2. 낙농제품

중미국가에서 낙농제품 WTO 양허관세는 35~100%이며, 실행관세는 60% 수준이다. 동 협정에 따라 중남미 6개국은 20년에 걸쳐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낙농제품의 관세는 그보다 더 빨리 철폐될 예정이다. 각국은 각각의 낙농제품에 대해 TRQ를 설정하도록 되어있는데 6개국 TRQ는 10,000 톤가량 된다. 미국에 대해서 TRQ를 설정한 중미 각국은 동일한 물량을 미국으로부터 TRQ 형태로 보장받는다. 최초 설정된 TRQ는 중미 5개국은 매년 5%씩, 그리고 도미니카는 10%씩 증량한다.

미국은 CBI에 의해 무관세로 미국시장에 수입되는 중미국가들의 낙농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낙농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20년에 걸쳐 철폐하는데 합의하였다. 이행초기에는 관세를 소폭 인하하고, 후반기로 갈수록 큰 폭으로 인하하며, 구제조치가 강구되어 있다.

### 3.2.3. 채소

중미국가들의 채소 양허관세와 실행관세는 각각 30~60%, 15%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채소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이지만 코스타리카의 신선양파는 초기 300톤의 TRQ 증량을 통해 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꽃양배추 등 채소 관세는 <표 1>에 나타난 일정에 따라 철폐될 예정이다.

CBI에 의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미국가들의 채소는 무관세가 적용되는데 FTA 협정이후에도 계속해서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 3.2.4. 과일 및 견과류

중미국가들의 과일 및 견과류 양허관세는 20~60% 수준이지만 150%에 달하는 품목도 있다. 실행관세는 일반적으로 15% 가량이다. 중미로 수출되는 미국산 과일 및 견과류의 70%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는 5내지 10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다. <표 2>는 중미 국가들의 주요 과일 및 견과류 관세철폐 계획이다.

### 3.2.5. 건조 완두콩, 강낭콩, 렌즈콩

콩류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WTO 양허세율은 25~110%이고 실행세율은 5~89%이다. FTA 협정에 따라 모든 품목의 관세가 15년내 철폐될 것이다. 다만 몇몇 품목은 즉각적인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고 일부 품목은 5내지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녹두, 빨강 강낭콩 등에 대해 도미니카는 8,565톤의 TRQ를 제공하고 매년 7%씩 증량하면서 15년에 걸쳐 해당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하였다.

표 1 중미국가들의 채소 양허내용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이
꽃양배추	12년내	5년내	10년내	10년내	10년내	10년내
단옥수수,신선	즉시	15년내	즉시	즉시	즉시	5년내
단옥수수,냉동	즉시	15년내	5년내	즉시	5년내	즉시
캔 단옥수수	즉시	10년내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상추	10년내	즉시	5년내	5년내	10년내	5년내
버섯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냉동채소	12년내	10년내	10년내	10년내	10년내	즉시
토마토페이스트	즉시	15년내	즉시	10년내	즉시	즉시
캔 아스파라가스	5년내	즉시	즉시	5년내	5년	10년내
혼합채소	5년내	10년내	5년내	10년내	5년	5년내

표 2 중미 국가들의 주요 과일 및 견과류 관세철폐 계획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이
사과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배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포도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복숭아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오렌지	5년내	15년내	5년내	5년내	10년내	10년내
체리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키위	5년내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혼합농축액	5년내	즉시	5년내	10년내	즉시	즉시
호두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알몬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 3.2.6. 감자

중미국가들의 감자 양허세율은 25~60%이고 실행세율은 15%인데 일부 민감 품목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FTA 협정에 따라 감자에 대한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다. 단 코스타리카에서 신선감자만이 쿼터외 관세의 인하 없이 최초 300톤의 TRQ 물량으로 시작하여 TRQ의 증량을 통해 개방이 진행될 것이다. 코스타리카에서 냉동감자 관세는 6년에 걸쳐 철폐되고, 2,631톤의 TRQ는 매년 5%씩 증량된다.

### 3.2.7. 곡물

#### (1) 옥수수

흰 옥수수에 대한 중미국가들과 도미니카의 양허세율은 35~75%이고, 중미국가들의 실행세율은 20%, 도미니카는 무관세이다. FTA 협정에 따라 도미니카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코스타리카는 점차로 철폐할 예정이다. 나머지 중미국가들은 쿼터 외 관세의 인하 없이 TRQ의 증량을 통해 자유화를 이행할 것이다. 이들 국가의 TRQ 증량은 매년 2%씩 이루어질 것이다.

노란 옥수수에 대한 중미 국가들의 양허세율은 15~99%이고 실행세율은 35%정도 이다. 다만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의 실행세율은 각각 1% 및 0%이다. 이 두 국가는 FTA 체결 즉시 노란 옥수수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나머지 4개 중미국가들은 FTA를 체결한 지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TRQ를 설정할 것이다. 관세인하는 이행초기보다는 후기에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며, 쿼터외 물량에 대해 구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CBI에 의해 중미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옥수수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 (2) 쌀

중미국가들의 쌀 양허관세는 35~90%이고 실행관세율은 15~60%이다.

FTA에 의해 도미니카와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미국가들은 18년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도미니카와 코스타리카는 쌀에 대한 관세를 20년에 걸쳐 철폐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행 초기보다는 후반에 더 큰 폭의 관세감축이 이루어 질 것이며, 쿼터의 물량에 대해 구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도미니카와 5개 중미 국가들은 정미에 대해 TRQ를 설정한다. 조곡에 대해서는 도미니카를 제외한 모든 중미국가가 TRQ를 제공한다. 중미 6개국의 TRQ 총량은 400,000톤으로서 관세가 철폐될 때까지 매년 증량된다. 다른 대부분의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CBI에 의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미산 쌀은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 (3) 대두 및 대두제품

대두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양허관세는 20~90%이고, 실행관세는 0~15% 수준이다. 코스타리카만이 대두에 대해 1%의 관세를 부과할 뿐 나머지 국가들은 무관세를 적용한다. FTA 협정에 의해 중미 모든 국가가 미국산 대두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대두박 및 대두분에 대한 관세 역시 거의 대부분의 중미국가에서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대두유 관세는 15년 내에 걸쳐 철폐될 것이다.

## 3.2.8. 기타

### (1) 땅콩

미국의 민감품목 중 하나인 땅콩의 경우 대부분의 중미국가들의 양허관세는 30~60%이고, 실행관세는 0~20%이다. 코스타리카는 땅콩에 대해 1%의 관세를 부과할 뿐이다. FTA에 의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도미니카는 미국산 땅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나머지 3개 국가는 5~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땅콩버터 관세는 니카라과와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국가가 즉시 철폐할 것을 약속하였다.

CBI에 의해 무관세로 미국시장 접근성이 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

국은 땅콩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은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이에 대해 땅콩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엘살바도르 땅콩에 대해서는 최초 5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5%씩 증량시킨다는 것이다. 니카라과이산 땅콩에 대해서는 초기 10,000톤에서 시작하여 5년간은 증량없이 그대로 TRQ 물량을 유지한 뒤 연간 10%씩 증량시킨다. 또한 미국은 니카라과이에 대해서는 280톤의 땅콩버터 TRQ를 제공하고 매년 10%씩 증량시킨다.

표 3 중미 및 도미니카에 대한 미국의 설탕 TRQ 제공

이행연차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이
1년차	11,000	10,000	24,000	32,000	8,000	22,000
2년차	11,220	10,200	24,480	32,640	8,160	22,440
3년차	11,440	10,400	24,960	33,280	8,320	22,880
4년차	11,660	10,600	28,000	37,000	8,480	23,320
5년차	11,880	10,800	28,560	37,740	8,640	23,760
6년차	12,100	11,000	29,120	38,480	8,800	24,200
7년차	12,320	11,200	29,680	39,220	8,960	24,640
8년차	12,540	11,400	31,000	42,000	9,120	25,080
9년차	12,760	11,600	31,620	42,840	9,280	25,520
10년차	12,980	11,800	32,240	43,680	9,440	25,960
11년차	13,200	12,000	32,860	44,520	9,600	26,400
12년차	13,420	12,200	34,000	47,000	9,760	26,840
13년차	13,640	12,400	34,680	47,940	9,920	27,280
14년차	13,860	12,600	35,360	48,880	10,080	27,720
15년차	14,080	12,800	36,040	49,820	10,240	28,160
연간 증량	220	200	680	940	160	440

## (2) 설탕

중미 및 도미니카는 설탕에 대한 관세를 15년내에 철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100%가 넘는 쿼터의 관세는 인하되지 않는다. 대신 미국은 도미니카 및 중미국가들에게 최초 107,000톤의 TRQ를 제공하고 이행 15년후에 151,000톤으로 늘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년 2%씩 증량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코스타리카에 대해 2,000톤에 달하는 특별설탕제품(Speciality sugar goods)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FTA협상에서는 중미지역의 설탕의 순수출국만의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미국이 설탕 재고관리를 위해 보상을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표 3은 미국이 FTA 협정에 따라 중미 5개국과 도미니카 국가에 대해 제공한 설탕 TRQ 이다.

## 4. 시사점

미국과 중미국가간 체결한 중미자유무역협정에서 세 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이 중미 6개국과 하나의 양허안을 작성하였지만 TRQ 제공을 포함한 실제 양허안은 개별국가별로 상이하게 작성한 점은 현재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세안은 10개국으로 이루어져 FTA 양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1:1 또는 1:10 방식으로 택할 수 있다. 경제규모 및 FTA에서 입장이 상이한 10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1:1 방식) 미국과 중미국가가 선택한 개별국가별 양허안 작성이 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행기간의 선택문제이다. FTA를 규율하는 GATT 24조에서는 합리적 이행기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내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에서는 10년을 훨씬 초과하는 FTA가 많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미국가간 FTA에서도 관세철폐 기간을 보통 15년으로 잡고 있고 쌀과 낙농제품과 같은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20년까지 길게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GATT에서 규정하는 이행기간 10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농업과 같이 민감한 부문은 충분한 이행기간을 확보하여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각에서는 FTA에서 예외 없는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미국과 중미가 선택한 개방방식, 즉 관세인하대신 TRQ를 제공하는 방안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감품목의 양허안 작성에 원용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폭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보다는 TRQ 물량을 다소 늘려주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오복 obkwon@krei.re.kr 02-3299-42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